외국인투자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자]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외국인투자자」 콘텐츠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소개하고,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제한 내용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지역을 소개하고, 조세 감면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의 투자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괄처리 민원사무 등 각종 행정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외국인투자자 1
1. 외국인투자의 개관 4
1.1. 외국인투자의 개념 4
1.1.1. 외국인투자란? 4
1.1.2. 외국인투자의 방법 5
1.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6
1.2.1. 외국인투자의 보호 6
1.2.2. 외국인투자의 제한 7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9
2.1. 외국인투자의 신고 9
2.1.1. 외국인투자 신고 9
2.2. 외국인투자의 허가 10
2.2.1. 외국인투자 허가 10
3. 외국인 투자지역 13
3.1. 외국인 투자지역 13
3.1.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3
3.2. 자유무역지역 14
3.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14
3.3. 경제자유구역 15
3.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15
3.4. 국제자유도시 17
3.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17
4. 외국인투자 지원 20
4.1. 조세지원 20
4.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20
4.1.2. 조세의 감면방법 21
4.2.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24
4.2.1.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4
4.3. 현금지원 26
4.3.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26
4.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28
4.4.1.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 28
4.5. 행정지원 29
4.5.1.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29
5.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31
5.1.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31
5.1.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31
5.1.2.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32

1. 외국인투자의 개관

1.1. 외국인투자의 개념

1.1.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의 개념

▪ "외국인투자"란 ①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出捐)하는 것,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⑤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용어의 정의

▪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② 자본재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④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⑥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1.1.2. 외국인투자의 방법

외국인투자의 방법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음의 외국인투자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 ※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상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5항).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母企業)
2. 외국인투자기업이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出捐)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①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상시 근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거나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이익잉여금 사용에 의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방법

▪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면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1.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제한

1.2.1.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보호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내국민 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3항).

1.2.2.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근거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③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제한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3항 참조).
>
> 1.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 2. ①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수출 허가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국인투자의 제한내용

▪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매년 통합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로 공고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참조).

>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
> · 산업통상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같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 · 외국투자가가 위의 업종 중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
> **※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
> · 외국인투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4조).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의 적용예외

▪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외국인이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2.1. 외국인투자의 신고

2.1.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①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②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외국인, 위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④ 위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사후신고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 외국인은 위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함) 등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 외국인투자의 신고 방법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서 2부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신고, 등록증 발급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외국인투자의 허가

2.2.1.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허가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

▪ 외국인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아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①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

②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①이나 ③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외국인, 위 ②나 ④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함)

④ 위의 ②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① 및 ③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허가여부 결정사항에 대한 고지

▪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4항).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5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전단).

▪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후단).

허가의 변경

▪ 외국인이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만 해당)
-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함)

▹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

· 외국인투자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함) 2부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인투자 허가 등 외국인투자의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investkore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지역

3.1. 외국인 투자지역

3.1.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 외국인투자지역은 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③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④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참조).

> ※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인센티브-입지지원-외국인투자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1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3호).

▪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제2항
토지분할 허가 면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1항
수입 또는 수출제한 완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2항
공장 건축면적 제한규정 적용제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4항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자유무역지역

3.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구분	근거법령	관리권자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산업통상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국토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	「항만법」 제2조제1호	해양수산부장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근거 법령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세 등의 면제·환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제46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및 제3항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경제자유구역

3.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외국인투자입지 현황-경제자유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종류	근거 법령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수의계약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민원사무처리 전담기구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상사분쟁 중재기관 설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Korean Free Economic zone 홈페이지(http://www.fez.go.kr/global/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국제자유도시

3.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투자진흥지구"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①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②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조건을 갖추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공통사항	사증(VISA)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제1항
	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
	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4조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제4항

※ 그 밖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경제/투자-투자유치-투자인센티브-제주투자진흥지구 참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http://www.jeju-sp.com)>

4. 외국인투자 지원

4.1. 조세지원

4.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1).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5.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26. 1.1. 이후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

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3~170).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외국인투자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정책/제도-국세조세정보-발간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조세의 감면방법

조세감면의 기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참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 다음 2년간 50%

※ 증자(增資)의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관세의 등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1항 본문 참고).

· 다만, 다음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2항).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세액이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참조).

구분		감면(공제)기간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취득세·재산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7년간 공제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공제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	-10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3년간: 100% 공제 -다음 2년간: 50% 공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관세만 면제됩니다.
※ 위 자본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7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함	

다만,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4항 참조).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보-국세정책/제도-국세조세정보-발간책자-『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1~p.2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4.2.1.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수의계약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 토지 등을 임대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에 한하며, 임대받은 후에는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다만,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본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1.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
> · 국가등은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제1항 본문).
>
>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다만, 위 1. 또는 3.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제1항 단서).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재산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전단 참조).

임대료의 산정 및 감면

임대료의 산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토지 등의 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본문).

▪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양도하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제1호)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 참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제35조, 「도시개발법」 제26조, 제6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임대료의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그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참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참조).

매입대금 납부기일의 연기 등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의 토지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4.3. 현금지원

4.3.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요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참조).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가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감액·환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 ※ 그 밖에 외국인투자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4.4.1.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란?**
>
> ·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입니다.
>
>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에서부터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 그 밖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ombudsman.kot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프로젝트 매니저(PM)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②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또는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

▪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면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후단).

4.5. 행정지원

4.5.1.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일괄처리 민원사무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난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처리 민원사무

개별처리 민원사무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일괄처리되는 사무 외에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 ※ "개별처리 민원사무"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처리 민원사무

직접처리 민원사무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 중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

> ※ "직접처리 민원사무"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5.1. 투자완료 후 사후관리

5.1.1.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 다만,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등록서류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의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5.1.2.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사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말소사유 확인 및 공시

▪ 수탁기관장은 위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

▪ 수탁기관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함)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 위의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